

예산총칙

2026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72,700,000	23,181,000
일반회계		705,075,000	21,152,250
특별회계		67,625,000	2,028,750
	공기업특별회계	57,374,000	1,721,220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33,645,000	1,009,350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23,729,000	711,870
	기타특별회계	10,251,000	307,53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5,467,000	164,010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054,000	31,620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926,000	27,780
	치수사업특별회계	949,000	28,47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371,000	41,130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484,000	14,52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5,061,040천원으로 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1,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명시이월 사업은 "명시이월 확정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4,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